「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4월 29일, 남진삼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따라,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표창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모범공무원 포상 조문 신설(안 제7조의 2)

○ 자구 수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정리(안 제5조 ~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4. 29.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따라,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창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모범공무원 포상 조문 신설(안 제7조의 2)

❍ 자구 수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정리(안 제5조 ~ 안 제1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직무에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종류)**에서 현행에 맞지 않는 ‘그 밖에 기념패’를 삭제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함.

❍ 안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수여 및 심사 대상을 ‘사람’에서 ‘경우’로 수정하여 기관·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외 현행에 맞지 않는 조문 표현을 정비 또는 삭제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령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표창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424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29일
발 의 자 :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 박춘희, 김성기, 김광성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따라,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나. 모범공무원 포상 조문 신설(안 제7조의 2)
다. 자구 수정 및 현실과 맞지않는 조문 정리(안 제5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창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람”을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감사장 및 공로상 등)”을 “(감사장 및 공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로상”을 “감사장 및 공로상”으로, “사람”을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호 및 제3호 중 “사람”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표창예정”을 “표창 예정일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은”을 “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사람”을 각각 “경우”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장 및 공로상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제12조제5항 중 “의회의사담당 주사가 된다”를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종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념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6조(표창장 및 상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제6조(표창장 및 상장) ① ----------대상자----------. <단서 삭제>
1.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1.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2. ---------- 경우
3.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3. ---------- 경우
4. 헌신적인 봉사로 군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경우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② ----------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대상자에게 수여한다.	----------.
1. 각급학교의 교육 성적이나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1. ---------- 경우
2.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	2. ---------- 경우
3. 그 밖에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등에 따라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3. ---------- 경우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표창장과 상장의 수여는 군수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장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등)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의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고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장 및 공로상) <삭 제>
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감사장 및 공로상---------- 대상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	2. ----------

나 전출할 경우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때 ---------- ---------- 경우
3.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 운영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 ---------- ---------- ----------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공로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실적을 기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8조(추천 등) ① (생 략)	제8조(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 또는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표창예정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감사장 및 공로상 등의 경우	② ---------- ---------- ---------- 표창 예정일의 ---------- ---. <단서 삭제>

에는 그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표창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제외대상)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제외대상) ---------- ---------- ---------- --- 대상자는 ---------- ------.
1. 표창의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1. ---------- 경우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2. ---------- ---------- -- 경우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 ---------- 경우
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4. ---------- ---------- 경우
5. 군세를 장기체납 중에 있는 등 다른 군민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	5. ---------- ---------- ---- 경우
제10조(공적심사)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추천 또는 요청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적을 심사(이 조례에서 “공적심사”라 한다)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	제10조(공적심사) ---------- ---------- ---------- ---------- --. ---------- ----------

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장·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	2. 감사장 및 공로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여방법) 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추천 또는 요청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부상을 마련한 때에는 이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수여방법) ①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의사담당 주사가 된다.	⑤ ----------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7조(재발급 등) 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파손 등 사유로 요청할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재발급 등) ① ---------- 사람 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모범공무원 표창(연 2명 이내)을 받은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1년간 지급 예정(총 240만원)

※ 규칙에 수당지급 내용 명문화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
연락처	(033) 330 -2500